

養鷄業種組合의 設立運營



李 肯 洙

(축협중앙회 지도부장)

1. 축협법에서 본 업종조합의 조표

1980년 12월 15일자 법률 제3276호로 공포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축협을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구분하여 육성하고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 일반적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을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끼리 협동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상정(想定)할 때 업종조합측이 협동의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겠으며 협동조합으로서의 순도(?)를 자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 축산업협동조합은 업종조합보다 지역조합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축협법에서도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을 축협조직의 근간(根幹)으로 삼고 있음은 첫째 지역조합이 92개이고 업종조합이 8개에 불과한 현실을 중요시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면 더 많이 설립되어 있음직한 업종조합이 적은 이유는 본래 우리나라 축산업의 바탕이 영세한데다 하향식으로 축협을 설립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 축산업의 발전전망과 산업환경으로 미루어 이와같은 현상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지역조합에 대하여 업종조합은 축협의 궁극적 발전지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축협법에서도 지역조합의 존립에 관계없이 그 문호가 열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축협법을 중심으로 업종조합의 조표 및 그 정신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설립의 문호개방

축협법 제99조(구역) 및 제100조(설립)에 보면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중심으로 조합원 자격 보유자의 축적이 되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지역조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1구역내에 1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나. 지역조합의 발전지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축협법 시행령 제4조에 지역조합을, 그리고 제32조에 업종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대비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업종조합은 지역조합의 발전지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조합원의 사육규모가 성장 확대되어 업종조합으로 전환된다면 지역조합은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업종조합과 지역조합원 자격요건 대비표)

| 구분＼규모 | 지역조합원자격 | 업종조합원자격 |
|--------|------------------|--------------------|
| 소 | 소 2두, 젖소 1두 | 젖소 5두 |
| 돼 지 | 10두 | 100두 |
| 양 계 | 신란계500수 육계1,000수 | 신란5,000수 육계10,000수 |
| 양 봉 | 10군 | 20군 |
| 양 토 | 100수 | 200수 |
| 양록(사슴) | 5두 | 10두 |
| 양 | 20두 | - |
| 오 리 | 200수 | - |

다. 축산계의 성격

축산계는 지역조합의 단위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바 이는 조합운영을 위한 행정편의목적에서 존치(存置)의 의의를 찾기 보다는 지역조합이 포용하고 있는 축종 및 그 규모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협동의 요인을 세분하고 소위 인적결합의 “모티브”를 삼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축산계는 축협조직 중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인 바 그 아기는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契”라고 하는 모임의 성립을 위하여는 동병상린(同病相隣)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결합이 용이할 것인바 그 “同病相隣”을 같은 지역의 양축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같은 지역내 같은 업종의 사람들끼리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며 축산계가 지역조합을 닮는다면 옥상옥(屋上屋)의 운용결과가 우려되며 업종조합을 닮는다면 축산공단의 뜻이 있어 생산 및 유통활동의 협동과 산학협동 등 보다 나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축협법에서 축산계의 설립과 구역에 관한 규정을 음미해 본다면 법 제94조(제의 조직과 구역)조합원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등을 중심으로 하여 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조합 구역과의 상관관계에서 지역조합내

의 소구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조합의 업무구역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해석상의 여운을 남긴다. 다만 축협의 정관例에서 지역조합에 한하여 그 하부조직으로 축산계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서 유추하여 지역조합의 업무구역이내에서 축산계의 관할구역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해보는 것이다.

어쨌던 축산계는 지역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업종조합의 어린 싸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다.

2. 양계업종조합의 설립전망

우리나라의 축산업 중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여 왔고 그 성장속도가 빠르며 일거에 대량생산을 이룩할 수 있는 업종이 양계업임에 틀림없다. 또한 생산물의 유통 및 판매체계에 있어서도 규격화 및 기계화가 용이한 사업으로 협동요인이 가장 많고 산학협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양계업종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매우 바람직한 요소를 함축하고 있으며 그 필요 또한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왜 양계업종조합이 일찍 설립 운영되지 아니하였느냐는 반문을 받게될 것이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면 첫째, 조합을 구성할 만한 양축가의 숫자가 일정지역내에 조성되지 아니하였으며, 둘째, 양계업은 그 발전과 성장과정에서 파동을 여러번 겪어 안정된 사업으로서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셋째, 업종조합을 구성할만한 규모에 이르는 양계가는 대부분 부화업을 겸영(兼營)하고 있어 서로 협동보다는 경쟁과 경제의 대상으로 경계해 왔기 때문에 소요자재(주로 사료)의 구입이나 계란 또는 육계의 판매는 지역축협을 이용함으로써 협동의 필요를 충족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면 통계를 통하여 양계업종조합의 설립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79년말 시도별 양계사육농가

| 시도별 | 2,500~2,999 수사육농가호수 | 3,000수 이상 사육농가호수 | 비고 |
|-----|------------------------|---------------------|----|
| 서울 | 7 | 82 | |
| 부산 | 12 | 44 | |
| 경기 | 199 | 1,752 | |
| 강원 | 20 | 128 | |
| 충북 | 19 | 97 | |
| 충남 | 66 | 334 | |
| 전북 | 31 | 91 | |
| 전남 | 44 | 221 | |
| 경북 | 176 | 727 | |
| 경남 | 6 | 351 | |
| 제주 | 6 | 60 | |
| 계 | 640 | 3,88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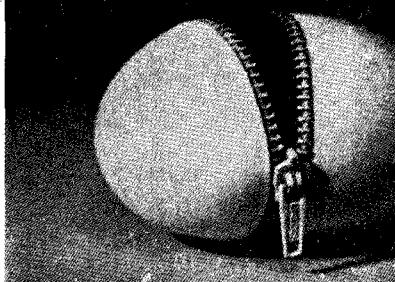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79년도말 통계에 의하면 현행 법상 축협의 업종조합원 자격요건이 되는 5,000수 이상(산란계)의 사육농가에 대한 통계가 없어 정확한 기반이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부산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업종조합을 성립시킬 수 있는 양축가의 수효는 확보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업종조합의 설립은 사람의 숫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며 협동이 가능한 지역과 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성질이 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언필칭(言必稱) 협동조합을 정의하자면 경제적 약자가 협동하여……”로 시작된다. 이 말은 지역조합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양축가에게는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이 된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여건에서는 업종조합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양체가는 경제적 약자가 아니고 높은 소득수준을 구가하는 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양체업은 지금 파이생산을 경제해야 할 입장이므로 부화업을 통한 경쟁과 경제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협력과 견제를 조화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즉 양체협회의 형태로서가 더욱 유용한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The simple solution ...



適者로 生存하는 길 ?

부화율 5% 향상

약추율 2% 개선

노동력 70% 절감

전력 50% 절감

무사고 離 출하

**Jamesway - 105 부화기는
거뜬히 해냅니다**



부화기의 베스트 셀러
과학축산시스템

서울 용산구 한강로 3 가 40-152 수입 판매
전화 : 792-7212 · 7887 엔지니어링